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FAQ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제도

□ Q1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이 무엇인가요?

A :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Q2 : 인증 주체는 어떤 기관인가요?

A: (민간부문)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인증합니다.

□ Q3 : 인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직업능력개발포털 HRD4U(www.hrd4u.or.kr)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Q1 : 어떤 기관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외)이라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대 상 기 관	공통사항
대기업 부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고용보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공공부문 제외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 · 재인증 대상 : 유효기간 내 재인증 신청한 기인증 기업 ('20~'22년)
중소기업 부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취업-후학습 기업 부문	· 선취업·후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선취업)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후학습) 재직자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점취득(학위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등	

□ Q2 :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

A: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공공부문 접수 안내

- ▶ 공공부문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 ▶ 이 메 일 : best-hrd@krivet.re.kr
- ▶ 전화번호 : 044-415-3941
- ▶ 우 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1112C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 ▶ 신청서 서식 및 세부사항 상세안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 Q3 : 재인증과 신규 인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 신규인증 신청기관의 경우 현장심사가 필수이나, 재인증 신청기관의 경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만점 기준 70% 이상 득점(대·중소기업 700점, 선취업후학습기업 70점) 이상 득점 시 현장심사가 면제됩니다.

□ Q4 : 대·중소기업과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두 개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A : 인증의 혜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즉, 기업 내 HRD 및 HRM 지원이 우수한 경우 일반으로 신청하고 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이 있는 경우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5 : 후학습은 선취업 근로자(고졸 취업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는 건가요?

A :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은 고졸 취업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든 지표로 고졸 취업자의 후학습에 대한 지원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Q6 : 선취업 근로자에 대학교 중퇴자도 포함이 되나요?

A :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면 선취업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혜택

□ Q1 : 인증 기관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 인증 기관에 4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명의 인증서·인증패를 수여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주요내용	비 고
고용 노동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정기 근로 감독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공통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3점)	
	부문별 최고득점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고용안정장려금(5점),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최대 10점)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1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5점)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보증료 0.2%p 감면, 심사 완화)	
문화체육 관광부	여가친화인증제 참여 심사 가점(최대 5점)	공통
기 타	인증기관 사례 홍보	공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	

4

제출 시 유의사항

□ Q1 :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HRD4U (www.hrd4u.or.kr) >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현황 설명서 및 붙임서류

* 신청분야에 따라 현황설명서 양식 및 심사기준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요망

- 가점사항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 Q2 : 어디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HRD4U 인증 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실시합니다.
(hrd4u.or.kr/hrdcert, ‘기업’ 회원 가입 필요)

□ Q3 : 신청 시 서류 작성분량이 얼마나 되나요?

A : 작성은 사업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현황설명서’를 기본으로 하며
‘본문 70쪽 내외, 붙임서류 30쪽 내외’로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 기준

□ Q1 :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사업 공고문의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Q2 :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점이 부여되나요?

A : 가점 부여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 야	가점 내용	비고
대기업 (11개)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④ 청년친화형 기업ESG지원사업 참여기업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⑥ 여가친화인증사업 참여기업	+3점
	⑦ 가족친화인증기업 ⑧ 일학습병행 실시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훈련 실시기업) 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⑩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⑪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5점
중소기업 (13개)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④ 청년친화형 기업ESG지원사업 참여기업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⑥ 기능한국인 운영 사업장 ⑦ 여가친화인증사업 참여기업	+3점
	⑧ 가족친화인증기업 ⑨ 일학습병행 실시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훈련 실시기업) ⑩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3년간) ⑪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⑫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⑬ NCS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2년간)	+5점
선택업 -후학습 (15개)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⑥ 노사문화우수기업 ⑦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2점

분 야	가점 내용	비고
	⑨ NCS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2년간) ⑩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사업 참여기업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⑫ 기능한국인 운영 사업장 ⑬ 여가친화인증기업	
	⑭ 일학습병행 실시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훈련 실시기업) ⑮ 현장실습선도기업	+5점

□ Q3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입니다. 인증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나요?

A : 일학습병행의 경우, 사업 ‘참여기업’ 이 아닌 사업 ‘실시기업’ 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일학습병행 실시기업은 참여기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훈련을 실시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 Q4 : 대기업 부문 남성, 여성 관리자 수는 왜 필요한가요?

A : 해당 심사기준은 인사에 관한 정부 시책 반영의 적절성을 평가 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하 AA)*』에 대한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Q5 : ‘관리자’ 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A : 관리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AA 제도의 관리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식조직도 상 각급 부서 단위의 책임자를 의미하며, 직급과는 무관하고 총 3가지 권한- ① 업무지휘 및 감독권, ② 인사고과(근평)권, ③ 결재권(전결) -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판단합니다. 단, 현장관리자(일선감독자, 계장, 반장)은 일반적으로 AA관리자로 인정하지 않으나, 관리자 3권을 모두 가진 것을 별도 증빙하는 경우, 관리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24.3.25.) 기준으로 해당 일자 관리자 인원 명부(개인정보는 삭제)를 첨부하여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 : 현장 심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서류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현장 심사가 실시됩니다. 현장심사는 6~7월 중 신청기업 관할지역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와 신청기업의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2일간, 선취업후학습 기업 분야의 경우 1일간 진행됩니다. 단, 심사 기간이 여름휴가 등과 중복될 수 있으니 신청 기업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2 : 현장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대기업 분야의 경우 3명의 심사위원이,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2명의 심사위원이 2일간 신청기업에서 실시합니다.
선취업후학습기업 우수기업의 경우 2명의 심사위원이 1일간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별도 심사장 마련이 필요하며, CEO 면담 시간 등 일정 협의를 통하여 세부 일정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 Q3 : 기업 주소지와 HR부서 소재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위치한 장소 및 인터뷰 할 담당자 업무 소재지가 기업 주소지와 다른 경우 관할 지부지사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Q1 : 결격 기준이 있나요?

A : 인증의 결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⑦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 ⑧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여부 결정)

□ Q2 : HRD 또는 노동관계법은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나요?

A: HRD 또는 노동관계법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근로기준법
- ②최저임금법
- ③남녀고용평등법
- ④임금채권보장법
-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⑥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⑦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⑧근로복지기본법
- 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⑪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⑫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⑮산업안전보건법
- ⑯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⑰고용보험법
- 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⑲중대재해처벌법

□ Q3 : 우리 기관이 결격사유에 해당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조회해 볼 수 있나요?

A :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피하기 위하여,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시고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구분	조회 방법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업 내부 자체 점검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 사전 정보공표목록→ 산업재해발생 건수 등 공표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국세청홈페이지→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고용노동부 공고 홈페이지→뉴스소식 →공지사항→명단 공고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고용노동부 공고 홈페이지→뉴스소식 →공지사항→명단 공고
⑦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대재해(산업안전 보건법)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기업 내부 자체 점검
⑧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여부 결정)	기업 내부 자체 점검

□ Q4 : 공고문에 보면 “최근 3년간 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라고 신청 제한이 있는데 과태료도 해당이 되나요?

A :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써 벌금 이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Q1 :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되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나요?

A: 이미 인증 받은 기업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추후 발생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인증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증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2020년에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 당시 취소 요건을 적용하게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 기업 취소 기준 ■

√ 인증 기간 동안

-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 ② 결격기준에 해당되어 인증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기관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①~②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신청 자격 박탈하며, '24.3.25 이후 소급하여 인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신청 자격 박탈

□ Q1 : 인증 받은 기관인데, 인증이 언제 만료되나요?

A: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근 3개년 간 인증 받은 기업의 인증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도	2020	2021	2022	2023(예정)	2024(예정)
인증 기간	2020.9.18 ~2023.9.17	2021.9.18. ~2024.9.17.	2022.9.18. ~2025.9.17.	2023.9.18. ~2026.9.17.	2024.9.18. ~2027.9.17.

□ Q2 : 인증확인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인증확인서는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며, HRD4U(www.hrd4u.or.kr)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온라인 신청 > 인증확인서 발급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Q3 : 인증받은 기업인데, 기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인증을 받은 기관이 인증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인증 확인서를 수정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4개 부처 인영 사용 승인 시기에 한하여 재교부가 가능하며(연1회, 9월 중), 인증패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Q4 : 문의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A: HRDK 고객센터 1644-8000으로 전화 주시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하여주십시오.

□ Q5 : 인증 심사 최종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1, 2차 심사 이후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합니다. 인증위원회 의결은 매년 8월말 경 실시합니다.

□ Q6 : 타 기관 작성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 기업의 우수사례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우수사례가 공개되어있고, 작성 사례의 경우 기업의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업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개가 가능합니다. HRD4U(www.hrd4u.or.kr)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전년도 인증 기업의 우수사례 E-book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7 : 우리 지역 담당 공단 지부·지사 ‘인증 사업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기관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권역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02-2137-0411
	서울서부지사	서울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02-2024-1734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02-6907-7178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02-2161-9113
	강원지사	강원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248-8504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033-650-5743
경기권역	경인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031-249-1271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032-820-8611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50-9117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750-6262
	경기남부지사	경기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031-615-9045
	경기서부지사	경기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032-719-0804
부산권역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1-620-1977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055-212-7215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052-220-3234
대구권역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청도군, 군위군	053-580-2316
	경북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054-840-3016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30-3231
	경북서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054-713-3002
광주권역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062-970-1743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063-210-9202
	전남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061-720-8521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061-288-3313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064-729-072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063-731-5506
대전권역	대전지역본부	대전,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2-580-9115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043-279-9026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홍성군	041-620-7605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044-410-8013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722-4312